



# 대 구 지 방 법 원

## 판 결

사 건 2015고정858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정윤정(기소), 정승원, 정윤정, 배관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지환

판 결 선 고 2016. 7. 6.

##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 유

###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3. 09:51경부터 10. 23. 18:46경 사이에 장소 주소



장소 주소 [redacted] 에 있는 장소명 [redacted] 에 설치된 컴퓨터로 사용자 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P2P)인 '토렌트(Torrent)'를 이용하여 저작권자인 [redacted] 이름의 동의없이 소설 소설명① 소설명② 를 스캔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공유폴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고소인은 2014. 10. 13. 09:51경부터 같은 달 23. 18:46경 사이 총 5회에 걸쳐 파일 공유사이트에서 100 여편의 소설로 이루어진 '소설 모음'을 검색한 후, 위 '소설 모음'에 있는 전체 저작물 중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설 소설명① 소설명②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를 선택하여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 다운로드 과정에서 IP [redacted] IP [redacted] IP [redacted] IP [redacted] IP [redacted] (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IP'라 한다)의 사용자가 이 사건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유, 업로드 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IP의 사용자를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IP의 사용자가 피고인으로 확인되었다.

2) 이 사건 저작물이 포함된 '소설 모음'의 전체 용량은 약 118GB이고, 이 사건 저작물의 전체 용량은 약 485MB이다.



3) 고소인은 각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공유자들로부터 '소셜 모임' 중 이 사건 저작물을 검색어로 하여 다운로드 받는 과정을 저장한 캡처 화면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캡처 화면에 의하면 고소인이 피고인을 비롯한 공유자들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총 용량은 약 500MB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전체 용량인 약 485MB을 15MB 가량 초과하고,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용량은 각각 80KB, 512KB, 656KB, 2.64MB, 8.65MB였다.

4)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 화면상 피고인이 '소셜 모임' 전체 중 다운로드 받은 최대치는 9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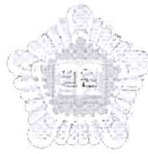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 공유폴더에 저장하고, 고소인에게 업로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토렌트 프로그램은 파일을 조각 파일 형태로 쪼개어 공유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조각 파일들을 서로 업·다운로드 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조각을 채워 전체 파일을 완성하게 된다.

② 피고인이 '소셜 모임' 전체 중 다운로드 받은 최대치는 98%로, 이 사건 저작물의 파일 조각 100%를 다운로드 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③ 비록 고소인이 이 사건 저작물을 검색어로 하여 다운로드를 받을 당시 그 공유자 IP에 피고인 사용의 이 사건 IP가 포함된 것은 사실이나,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위 공유자 IP 캡처 화면만으로는 특정 파일에 대한 업로드 여부를 특정할 수 없고, 고소인이 전체 '소셜 모임' 중 이 사건 저작물을 검색어로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공유자





들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은 용량이 이 사건 저작물의 전체 용량인 약 485MB를 초과한 약 500MB이었던 것을 보면, 고소인이 다운로드의 범위를 이 사건 저작물로 제한하였다 하더라도 고소인이 다운로드 받은 용량 중 약 15MB 가량은 이 사건 저작물이 아닌 다른 저작물 또는 다른 내용의 파일 조각으로 보이는데,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파일 조각의 최대 용량은 8.65MB로 이를 넘지 않아,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파일 조각이 이 사건 저작물의 파일 조각이 아닐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못한다(고소인은 자신의 경험상 원하지 않는 저작물이 다운로드 될 경우 용량이 8MB에서 멈춘 상태로 있게 되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업로드 해 준 파일 조각의 용량은 8MB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업로드 해 준 것은 이 사건 저작물의 파일 조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승혜 \_\_\_\_\_